

PL에서의 결함의 이해 (하)

글 · 전판재 대표이사 (주)텔리넷

< 목 차 >

1. 들어가면서
2. 결함이 개념
3. 결함의 의미
4. 결함의 종류
 - 1) 제조상의 결함
 - 2) 설계상의 결함
 - 3) 표시상의 결함
5. 결함의 판단기준
 - 1) 표준일탈 기준
 - 2) 소비자 기대 수준
 - 3) 위험효용 기준
 - 4) 바커 기준
6. 결함판단의 한계
 - 1) 기술기준
 - 2)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조물
 - 3) 피해자측의 행위
7. 선의와 무과실
8. 과실상계
9. 독일 PL법의 시작과 발전
10. 미국의 2nd Restatement of the Law(T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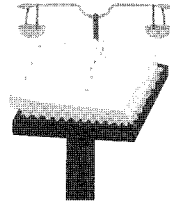
9. 독일PL법의 시작과 발전

1) 개괄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 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일에서는 1989년에 들어와서야 EC지침을 수용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었다.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의무의 위반을 추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제



조물책임은 오직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거의 전부가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과실의 입증 의무를 제조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 즉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내지 완화하고 있었다.

그후 1960년대의 사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의약품피해의 분야에서 제조업자에게 엄격 책임을 지우는 강한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76년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5년 EC지침이 EC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채택됨으로써 이에 따라 독일도 국내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그 후 1988년 6월 9일에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 등이 져야 할 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연방정부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래서 1989년 12월 5일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는 특별법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전부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EC지침의 내용을 거의 전부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의 항변을 인정하고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라고 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아래,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리

① 계약책임

계약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도매점·소매점·소비자로 유통되는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거나 제조업자가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② 하자담보 책임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어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라 한다. 여기서 하자(瑕疵)라 함은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또는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을 결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말소되거나 감소함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계약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한정된다. 다만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의 청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근거하는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독일법원은 프랑스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직업적 매도인에 의한 악의의 추정 즉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므로써 입증책임이 전환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의 추궁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③ 보증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보증된 기능과 성질을 결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소비자가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때 제소기간은 6개월이다.

④ 불법행위책임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위법으로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사고 및 가해자가 판명되는 경우는 3년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68년에 발생한 닭페스트 사건 이후 제조물책임에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이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로 원고는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 사실과 그리고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배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어떤 행위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면, 당해 사업이 속하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제조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주의의무는 특히 고도화되고 또 객관

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취급설명서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과실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결함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3) 과실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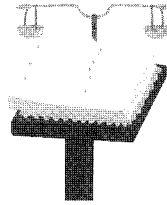
과실(過失)이란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고의(故意)에 대립되는 의미로 쓰인다. 형법상으로는 과실은 책임조건의 하나이며, 고의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되며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된다.

〈민법상의 과실과 형법상의 과실〉

민법상의 과실	형법상의 과실
추상적 경과실	경과실, 중과실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있는 주의 의무 태대
채무불이행·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범죄 구성 요건·기중 처벌 이유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된다. 배상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 가능하다. 즉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도 및 범위를 참작하는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구에 기하는 법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



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리로서, 일명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가 인정됨에 따라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이러한 원리도 대량생산체제와 대량소비단계에서는 또한 현대사회의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해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의 예외적 적용이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는 특히 공장에서 유출되는 생태계훼손 및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심각히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민법도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이에 대한 실정법상의 예로는 광업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입법을 통해서 과실책임주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도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적인 입법예라고 할 수 있다.

4) 결함과 하자의 차이

결함과 하자의 구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과 논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

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피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하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기능성이나 상품성의 측면에서 불량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제조물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의 기능과 특성,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용형태와 제조물의 공급시기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입한 자전거가 앉는 위치가 좋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품질이 나쁜 것으로 이른바 하자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자전거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이 자전거의 앉는 자세가 불편하여 자동차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결함의 문제가 되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함과 하자의 용어를 엄격한 법리로 구별하면, 하자는 민법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이고, 결함은 제조물책임법 이상의 책임요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물의 제조나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성은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재산을 훼손하거나 소손(燒損)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결함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위험

을 발생시키는 제조물의 결점을 의미한다. 단순한 품질불량이나 성능의 장애 및 오작동 등은 결함의 문제로 볼 수 없고 하자로 여겨진다.

요컨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란 단지 제조물의 품질이 낮다는 것과는 연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어떤 제조물이 품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인적 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이 제조물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함으로 인정된다.

5) 판례의 진전

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독일 법원은 1915년에 합성염 사건에서 과실의 입증 책임을 수정하여 전환하였다. 합성염에 작은 유리 파편이 혼입되어 있었고, 그것이 약방에서 처방된 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복용한 소비자가 맹장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합성염의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의 최고재판소인 당시의 라이히재판소는 “상해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제조업자측에서 그 근로자의 선임이나 감독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이른바 1968년에 발생한 닭페스트 사건도 제조물책임을 거론함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양계업자가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닭페스트의 예방주사를 놓았는데, 불량백신에 의하여 4,000마리 이상의 닭이 닭페스트에 걸려 죽은 사건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

는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결함의 원인이 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또한 제조업자의 의무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한 것이다.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판결로서, 그 후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는 제조업자측에서 무과실이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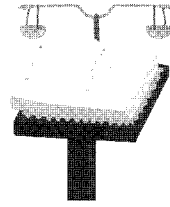
② 제조업자에 고도의 주의 의무 부과

독일에서 일어난 폐쇄장치사건은 제조업자의 주의 의무를 일층 강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제조업자인 피고가 제조한 목재 운반차 뒤에 설치되어 있던 버팀목 폐쇄 장치의 고장으로 원고인 근로자가 부상당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거래 안전 의무라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보다 안전성이 높은 장치의 제조가 가능했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③ 인과관계 및 결함의 추정

1970년에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브레이크 사건은 단적으로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벤츠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추월할 때 전방의 트럭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바퀴 브레이크의 결함으로 인하여 차체가 뒤집어져서 전복된 사건이다.

연방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을 간접증거에 의하여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최고재판소는 “결함이 복수



의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된 경우에, 그 결합이 당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사고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사고는 그 결합있는 브레이크의 결과라는 표현 증명이 초래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6) 약사법에 무과실책임의 도입

독일에서는 일반불법행위 책임보다도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몇 개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1960년대의 사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개정 약사법이 이러한 취지에서 유명하다. 이 개정 약사법은 1976년 8월에 제정되어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84조에 따르면, 의약품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한다던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무과실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약회사가 부담할 책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배상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고, 각 손해배상의무자간의 분담액은 원인이 어느 누구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 배상의무는 사전에 제한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무효가 된다. 특히 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준비금을 보험, 신탁 또는 변제보증으로 준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 독일 제조물책임법(전문)

제1조 (책임)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물이 손괴된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재물손괴시에는 결함제조물이 아닌 다른 재물이 손괴되고 그 다른 재물은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2.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제조물에 손해를 일으킨 결함이 없었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 3. 제조자가 판매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 기타 형태의 판매를 위해서 제조물을 제조한 것이 아니며,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것이 아닌 경우
- 4.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강제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5.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3) 부품제조자는 결함이 그 부품이 조립된 제조물의 구조 또는 제조물 제조자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전단은 원재료 제조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4) 피해자는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2조 (제조물) 본법상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동산 및 전기를 말한다. 일차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경제적 토지생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농업적 자연생산물)은 예외로 한다. 수렵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 (결함)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제2조 (제조물) 본법상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동산 및 전기를 말한다. 일차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경제적 토지생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농업적 자연생산물)은 예외로 한다. 수렵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 (결함)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제조물은 결함이 있다.

- (a) 제조물의 표시
- (b)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사용
- (c) 유통된 시점

(2) 제조물은 후에 보다 우수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4조 (제조사) (1) 본법상 제조자란 완성품,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를 말한다. 또한 자신의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통째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자로 본다.

(2) 판매, 임대차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제조물을 EEC설립조약의 적용지역에 수입하는 자도 제조자로 본다.

(3)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청구의 도달 후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제조자 또는 자기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수입물의 경우 제조자의 성명을 알 수 있으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다수의 배상의무자)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제조자가 동시에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들은 연대책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배상의무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의무와 지급하여야 할 배상 범위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해가 누구에 의해 얼마만큼 야기되었는가에 따른다. 그밖에 민법 제421조 내지 제425조, 제426조 제1항 제2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6조 (책임경감) (1)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 제254조를 적

용한다. 재물손괴의 경우,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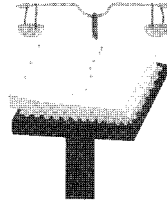
(2) 사망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거나 부양의무를 지게 될 관계에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제3자가 부양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사망자가 추정생존기간동안 부양할 의무가 있었던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상해 당시에 제3자가 수태되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의무는 발생한다.

제7조 (사망시 배상의무의 범위) (1) 사망의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료중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거나 필수품이 증가함으로써 사망자가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밖에 배상의무자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사망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거나 부양의무를 지게 될 관계에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제3자가 부양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사망자가 추정생존기간동안 부양할 의무가 있었던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상해당시에 제3자가 수태되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의무는 발생한다.

제8조 (신체장해시 배상의무의 범위) 신체 또는 건강침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거나 필수품이 증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금에 의한 손해배상) (1)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



의 생계비 증가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본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3자에게 보장되는 손해배상은 장래에는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민법 제84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책임한도액) (1) 어떤 제조물 또는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조물에 의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천만 마르크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배상액이 본조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배상액은 그 총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한다.

제11조 (물적손해시 자기부담) 물적손해의 경우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멸시효) (1) 본법 제1조에 의한 청구권은 배상청구권자가 손해, 결함 및 배상의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배상의무자와 배상청구권자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협의의 계속이 거절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이 밖에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청구권의 소멸) (1) 본법 제1조에 의한 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절차나 독촉절차가 계속중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이나 다른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본조 제1항에 제1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판외의 화해

대상인 청구권 또는 법률행위상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인된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제14조 (강제규정성) 본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의무는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

제15조 (의약품책임 : 다른 법규에 의한 책임) (1) 약사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인가의무가 정하여져 있거나 법규에 의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된, 인체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법규정에 의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과규정) 본법은 법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조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법률상 규칙의 공포) 연방법무장관은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유럽공동체회원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의 지침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럽공동체이사회의 지침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률상 규칙에 의해 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0조의 효력폐지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베를린 조항) 본법은 제3차 이주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베를린 영토에서도 적용한다. 본법에 의해 공포되는 법률상 규칙도 제3차 이주법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베를린 영토에서 적용한다.

제19조 (시행일) 본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PL법의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C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은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것은 결국 EC지침 제2조와 동일한 것이다.

②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제한

첫째, 결합있는 제품 그 자체의 손해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지 아니한, 소위 단지 하자있는 제품에 관한 것이다.

둘째, 결합 제품에 의해 다른 재물이 손상된 경우에도 그 다른 재물이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업자는 책임을 진다.

셋째, 물적 손해의 경우 1,125마르크 범위까지의 손해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책임 한도액

동일한 결합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1억 6천만 마르크의 한도내에서만 책임보상을 부담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감소한다.

④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당시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976년의 개정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를 제외한다.

⑤ 의약품 책임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의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의약품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위자료

여기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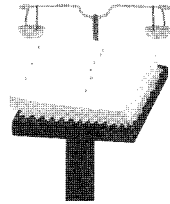
⑦ 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입증책임, 결합의 판단기준, 제조업자의 범위, 연대책임, 책임경감,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 등은 EC지침상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9) 결론

제조물책임법은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국가경제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법제도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감에는 누구나 고도첨단 그리고 정밀제품을 항상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기능을 향유하여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의 기능, 성질, 성능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조물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또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여



도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시간과 지식이 부족하여 충실히 숙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일일이 주위에 있는 많은 제조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함에 그 기본 정신이 있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양질의 제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판매할 때에는 제조물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그 위험성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제조물의 사용시 소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기업이 잘못된 사용을 유발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이 유발되는 제조물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 바로 제조물책임법이다.

고도의 통신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 그리고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여실히 제기된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독립된 제조물책임법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의 사례와 판례를 통해 1960년대 초부터 불법행위법리를 확대하여 엄격책임원칙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4년 6월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의 국제적 통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73년에 제조물책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조약안을 채택하였고, EC에서는 여러 차례 초안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1985년 7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현금의 대다수 EU국가가 채택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의 입법지침이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많은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은 이 지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경향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제조물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판례가 발전되어 왔고, 이로써 오늘의 엄격책임법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은 제조물책임원칙으로만 제조물책임법리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엄격책임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s)에서도 법원의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독일의 PL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지침”에 기초하였고 일본이나 한국도 이에 많은 부분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독일과 100년이 넘는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고 주요 교역대상국이므로 앞으로 계속 독일의 PL의 발전적 추이를 지켜보아 연구·검토·분석해야 할 것이다.

10. 미국의 2nd Restatement of Law(Torts)

◎ 제402조 A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유형적(有型的) 손해에 대한 제품판매자의 특별책임

(Special Liability of Seller of Product for Physical Harm to User or Consumer)

① 이용자 혹은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것에 의해 말단 소비자 즉 최종 이용자 혹은 소비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생긴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 부담한다.

(a)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

(b) 제품이 판매된 때의 상태에서 중요한 변경(變更)을 받은 바 없이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기대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달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매도인(賣渡人)이 제품의 조정(preparation) 및 판매에 있어 모든 가능한 주의(注意)를 다한 경우 및

(b)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당해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사지 않았든지 또는 매도인과 여하한 계약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 제402조 B 동산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부실표시

(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동산(動産)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광고,

레테르(labels),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공중(公衆)에 대해서 자기가 판매한 동산의 성능 또는 품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부실표시(不實表示)를 한 때에는 그 부실표시에 대한 상당한 신뢰로 인하여 동산소비자에게 생긴 유형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록

(a) 부실표시가 사기(詐欺) 또는 과실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b) 소비자가 그 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사지 않았던 경우나 혹은 매도인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또한 같다.

* 영어의 chattel이라는 단어는, 소지품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소유물(article of property)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복수형(chattels)으로서는 가재(家財), 종합적으로 동산(personal and movable property)을 의미한다.

특히 goods and chattels하면 동산으로, 가구·가재 따위 동산 일체를 말한다. chattels는 goods에 포함되지 않는 지상권이나 경작권 따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낱말로 「동산 일체」라는 뜻을 나타낸다.

chattel personal 순수동산

chattel real 부동산적인 동산, 곧 토지의 정기(定期) 대차권 따위이다.

chattel mortgage 동산저당

웹스터(Webster)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an item of 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except real estate, freehold, and the things which are parcel of it : a piece of personal property.

(편집자 주)